

제 245회 정례회
2005.12.23(금)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 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 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정례회

·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5. 12. 16)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

가. 제안이유

- 「바이오토피아 충북」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 공모사업을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
(안 제2조 1항 1호)

-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 비용지원 신설(안 제2조 1항 7호)
-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신설(안 제2조 1항 8호)
-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2항)
- 제2조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3항)
- 인사위원회 구성을 90인 이내 → 30인 이내 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한 종 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전문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 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연간 소요액 및 소요경비 산출 근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과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조정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첨단산업의 특성상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30명의 자문위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 첨단기술 인력확보, 대학내 기술특화연구사업, 제품인증 사업
6.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사업, 홍보지원사업
7.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
8.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9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 공모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 첨단기술 인력확보, 대학내 기술특화 연구사업, 제품인증 사업 6.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사업, 홍보지원사업 등 	<p>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①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산업화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 첨단기술 인력확보, 대학내 기술특화 연구사업, 제품인증 사업 6.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사업, 홍보지원사업 7.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 비용 지원 8.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p>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를 전체위원회라 칭한다.</p> <p>②~④ (생략)</p>	<p>제5조(구성) ①.....</p> <p style="padding-left: 40px;">.....30인 이내.....</p> <p style="padding-left: 40px;">.....</p> <p>②~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 요령(산업자원부) 제7조(전담기관)

①제3조의 규정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 첨단산업 육성사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

- 세계 챔피언 급 스타제품 개발 및 선도 기업 육성
 - R&D 지원에서 제품의 사업화 위주로 지원 강화
- 바이오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
 - 제품개발비용의 40%, 개발기간의 50%가 소요되는 안전성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
-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등 상품판매 촉진사업 추진
 -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상품 판매 촉진 기대

□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 지원

- 기획, 평가, 선정, 관리, 정산, 기술실시계약, 기술료징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위 업무에 다수의 행정인력이 업무 수행하여 업무 비효율
- 대상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관리가 어려움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대상사업	12 (12)	23 (11)	34 (11)	41 (7)	

- 전문가를 보유한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 과기부는 과학기술평가원에 위탁

□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 첨단산업육성위원회 6개 분과 90명 → 2개 분과 30명 조정
- 기능이 유사한 분과를 통·폐합하여 효율성 제고